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6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이소영·강득구·강병원

강준현 • 고민정 • 김경만

김민철 · 김성주 · 김성환

김승원 · 김영배 · 김원이

김정호 · 민형배 · 박용진

박 정・박주민・박홍근

배진교 · 신정훈 · 양경숙

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유정주 • 유영찬 • 이광재

이규민・이수진・이수진(비)

이용빈 · 이원택 · 이해식

장경태 · 정필모 · 조오섭

진성준 · 최혜영 · 허 영

허종식 · 홍성국 · 홍정민

황운하 의원(46인)

제안이유

2020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경제에 가장 파급력이 큰 위협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패'가 꼽힐 정도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

하에서 EU,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작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이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나아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 역시 파리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의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최근 세계 온실가스의 30% 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야흐로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상황임.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전환할 필

요성이 크고,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함.

이에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 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즉,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법의 목적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탈탄소 기술과 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203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 다.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야 함(안 제12조).
- 라. 국가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32조).
- 마.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

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공공 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 바.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 등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의 배출·흡수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입을 영향을 평가 (기후위기영향평가)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 아. 정부는 에너지 분권,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등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 분석 및 입지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및 수용성 제고, 전력계통망 확충 및 계통안전성 보강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방안 마련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1조).
- 자. 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총량제한 제도 도입 등 녹색건축 물 확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등 탈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친 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탄소흡수원 확충, 지속가능한 국토

- 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2조부터 제4 5조까지).
- 차.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사회 이행 과정의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탈탄소의 생산·소비 문화 및 탈탄소생활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함(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카. 정부는 탈탄소 경제와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의 지원과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하며, 탈탄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 및 인증, 탈탄소산업의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자산손실 위험을 최소화함(안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 타.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적응대책의 수립, 산업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및 사업전환의 지원을 추진할수 있으며,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정의로운전환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 파.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함(안 제64조).
- 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탈탄소사회이행책임

관을 지정하며, 국가전략 수립 시 국회 보고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여야 함(안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제522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탈탄소 기술과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위기"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으로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2. "탈탄소"란 에너지 효율 혁신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탈피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3.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 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 4. "탈탄소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5. "탈탄소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탈탄소를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6. "탈탄소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7. "탈탄소경제"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탈탄소기술과 탈탄소산업을 육성하여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 8. "탈탄소생활"이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1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까지 고려한 제품을 말한다.
- 1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 14.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15. "에너지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탈탄소 방향에 맞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1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17.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 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제3조(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탈탄소사회 이행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정부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위기대응전략이자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탈탄소사회 이행을 추진한다.
 - 2.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 스 감축 목표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 3.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 등 모든 단위가 협력하여 탈탄소사회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4. 정부는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줄이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경제·사회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5. 정부는 탈탄소기술과 탈탄소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 출을 통해 탈탄소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6.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소비를 절감하며,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를 구축한다.
- 7. 정부는 기후위기가 일으키는 국토 및 해양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건강, 수자원,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등의 피해와 재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8. 정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 9. 정부는 기후위기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책임과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한다.
- 10.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적응대 책을 충실히 마련하며, 산업간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 보호

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과 관련된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탈탄소경제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 제공이나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 ⑥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탈탄소사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관련 교육과 홍보를실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집 행과정에서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탈탄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탈탄소기술 연구개발과 탈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의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증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탈탄소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기술 연구개발과 탈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 학교 및 직장 등에서 탈탄소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기업의 탈탄소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 사용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한다.
 -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위기,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라는 인식하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탈탄소생활에 적극 동참하고, 지구 생 태계의 회복과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제12조에 따른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목표 등

- 제10조(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목표) ① 정부는 2050년 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203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이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매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 는 「파리협정」에 따른 진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검토의 시기, 방식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이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정부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건물, 수송, 발전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연간·반기별·분기별로 잠정치를 산정하고, 각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공개된 연간 배출량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연도별 이행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작성하여 제 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의 공개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의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등

- 제12조(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탈탄소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 4.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 5.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 6. 탈탄소생활, 녹색건축물 확대,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 농림수산의 전환 및 탄소흡수원 확충, 녹색국토 등에 관한 사항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 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추 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6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 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등

- 제18조(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그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난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제2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 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22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23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 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2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제2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1.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사항
 - 2.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과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정 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 관련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5.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 등과의 교 류·협력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제26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 4.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5.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목표 관리,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7. 제64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 록 한 사항
- 제2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 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29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목표
 - 2. 직전 연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3. 제11조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59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여부 및 위험 요인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후위기 및 그 대응 정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 계층, 산업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32조(지방기후위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33조(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 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기후위기 상황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기후위기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7. 기후위기 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8. 기후위기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에 관한 사항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은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이 원활하 게 수립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제34조(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시행) 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을 추진하고 제10조의 국가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여 탄소 배 출 없는 전력망을 구축해 나간다.
 - 2.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실질화·합리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경제구조로 전환한다.
 - 3.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제규범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도입·개선하여 새로운 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한다.

- 4. 중앙집중형 에너지 중심에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이행을 촉진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하며, 에너지 분권의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에너지 체제로 전환한다.
- 5.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누구나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 도록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확대하 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 6. 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 제36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하이 조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하다.
 - ②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 4.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분권 및 추진 경로 등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
- 6.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대책 등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부존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3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의무,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기준, 분석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8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운영)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9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관리제)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 목표설정 방식 및 위반 시 제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제40조(기후위기영향평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온실가스의 배출·흡수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입을 영향을 평가(이하 "기후위기영향평가"라 한다)하며,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후위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1조(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립·시행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방안 마련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 효율 개선, 절약 등 에너지 소비 감축에 관한 사항
 - 2. 석유·가스·열 등의 전기화(電氣化)에 관한 사항
 - 3.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에 관한 사항
 - 4. 재생에너지의 입지 잠재량 분석 및 입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보조제도에 관한 사항
 - 6.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7.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8.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망 확충 및 계통안정성 보강에 관한 사항
 - 9.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체계 등 분권화에 관한 사항
 -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능화·고도화에 관한 사항
 - 11.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공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은 제35조에서 정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환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에 국고보조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 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 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 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개발,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온실가스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⑨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
- 제43조(탈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

고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 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 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친환경차의무판매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

-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 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 2.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3.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 4.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구축
-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 제44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5조(녹색국토의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관 리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자원순환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 2. 산림·녹지의 확충, 광역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 4.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 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 6.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탄력성 제고
-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정부는 자원순환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6조(국민 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고, 탈탄소 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8조(탈탄소생활의 실천과 확산) ① 정부는 국민의 탈탄소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탈탄소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탈탄소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탈탄소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탈탄소생활 실천이 전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탈탄소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⑥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 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탈탄소경제의 구현

- 제49조(탈탄소경제·탈탄소산업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탈탄소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탈탄소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탈탄소경제·탈탄소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탄소경제·탈탄소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기존 산업에서 탈탄소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 3. 탈탄소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4. 탈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
 - 5. 전기·정보통신·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 하기 위한 사항
 - 6. 탈탄소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7. 탈탄소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탈탄소경제·탈탄소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제50조(기업의 탈탄소경영 촉진 등) ①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2.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실적 및 감축계획의 공개
-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탈탄소경영 성과의 공개
- 4.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에 대한 지원 및 탈탄소기술의 사업화 촉진
- 5. 대기업의 탈탄소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탈탄소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 7.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
- 8. 그 밖에 기업의 탈탄소기술 및 탈탄소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 제51조(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탈탄소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2. 탈탄소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탈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4. 탈탄소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 ② 정부는 정보통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탈탄소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탈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2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탈탄소경제 및 탈탄소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2. 탈탄소경영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지원 및 투자 활성화
 - 3.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 성화
 - 4. 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탈탄소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강화
 -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6. 그 밖에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이 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3조(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 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매년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및 처리, 시정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탄소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정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탈탄소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 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 인력

- 의 유치에 관한 사항
- 4.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탈탄소기 술·탈탄소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56조(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정부는 탈
 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7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탈탄소사회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평가하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전환을 지원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 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도록 하는 제 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장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 제58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확충)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 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에 있어 사업 전환·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정기 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 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자원과 수자원 등의 변화와 국민건

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 자원의 확보
 -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 개선

-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 · 복원
-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제61조(산업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산업전환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큰 고용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2.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
 - 3. 그 밖에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 상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 4. 위원회가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고용조정지 원 및 고용안정대책 수립
 - 3.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 규제완화

- 4. 그 밖에 산업전환에 필요한 행정상·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지역별·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탈탄소사회 이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 관련 실태조사
 - 2.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 5.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건의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 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또는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환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64조(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 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 6.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
 -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4. 제61조에 따른 산업전환특별지구를 포함하여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에 대한 지원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 6.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지원

- 9.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6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 제67조(탈탄소사회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탈탄소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탈탄소사회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탄소사회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법 인·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9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탈탄소사회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 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탈탄소사회 이행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 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1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 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 제3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표의 이 법 시행일 이후 첫 재검토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기존 계획의 재수립) 정부는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수립된 국가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제 10조제1항의 국가비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재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탈탄소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탈탄소경제"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42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9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51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 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탈탄소생활"로 한다.

④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59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43조제2항"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43조제2항"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탈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으로 한다.

⑦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위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 2조제1호의 기후위기"로 한다.

⑧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9호"를 하다.

제4조제5항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위원회"로 한

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9조제3항"으로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⑨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36조제2항"으로한다.

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43조제2항"로 한다.

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로 한다.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44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관리제"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 2조제5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 39조제2항"으로 한다.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한다.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탈탄소경제(이하 이 조에서 "탈탄소경제"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탈탄소경영"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탈탄소경영"으로 한다.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탈탄소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탈탄소산업"으로 한다.